

-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專門委員 檢討報告

⌘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5년 12월 5일
-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6일

⌘ 제안 이유

-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『지방 공무원 복무규정』(대통령령 제18739호)에서 규정된 근무시간, 특별휴가, 영리업무의 금지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주요 내용

○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(안제13조)

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○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(안제16조)

업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

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- 특별휴가의 조정(안제23조 별표 3)
-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규정(안제26조)

㉔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2005년 3월 18일 공포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의 근무시간, 동 규정에 신설된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조항 신설과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것으로
-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,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하되 직무의 성질·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청원경찰 등 현업공무원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통합·정비함에 따라 조례에 신설하였으며

※ 별도의 대통령령은 「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」을 말하며 이는 폐지하였음

-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포상휴가, 20년 장기재직휴가, 퇴직준비휴가는 폐지하고, 여성보건휴가는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으며, 경조사휴가는 일부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되었습니다.

-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,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토요일 휴무원칙, 직무의 성질에 따라 중식시간 변경가능, 여성 보건휴가의 무급화, 경조사휴가를 포함한 특별휴가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이는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2004년 7월 1일에 있었던 '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 일수 축소'를 핵심으로 했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조치로 이해가 됩니다.

다만, 특별휴가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민간기업과의 비교 등 명확한 기준이나 사유설명이 없는 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